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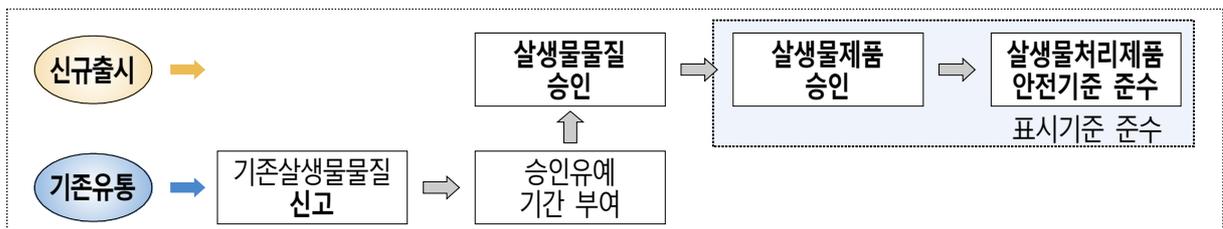
 환경부 <small>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 나은 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년 11월 15일 조간 (11. 1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한준욱 과장 / 심승우 사무관 044-201-6805 / 6828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권명희 과장 / 이재웅 연구관 032-560-7190 / 7199	
	배포일시		

신고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673종에 대해 용도별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
- ◇ 신고하지 못한 기업 대상 30일간 추가신고 접수
- ◇ 2019년 12월 31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정 고시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1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체계 >



- 이번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다.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의 제품 유형), 국내외의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에서 최대 10년(3·5·8·10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이 부여된다.

유예기간	3년 (‘22.12.31.)	5년 (‘24.12.31.)	8년 (‘27.12.31.)	10년 (‘29.12.31.)
물질 수(종)	465	88	363	166
주요 대상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기죽류용 보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중복 제외) 다유형 물질은 유형별로 유예기간을 부여(예: 살균제 3년, 제품보존제 8년)

-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될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712개 사이며, 이들 기업은 물질별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추어 정부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에,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에,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자세한 승인유예대상 물질의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및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면,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이동신고센터 운영, 1대1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 * 산업계 설명회, 살생물제 사용 가능 물질 취급업체(9,200여 업체) 대상 1대1 전화 안내, 이동신고센터 운영, T.V·라디오·옥외광고 등 실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물질 확인 지연 등으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11월 11일부터 추가신고를 받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신고가 필요한 기업은 올해 12월 1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 내선 3번)하면 된다.
-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추가신고 사항을 반영하여 12월 31일 고시 확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운영 안내서를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승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독성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고 유해성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라면서,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세심히 지원하여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로 조속히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살생물제 용어 정의.
 2.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3.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4. 질의응답. 끝.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심승우 사무관(044-201-6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붙임 1

살생물제 용어 정의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물질명	유해성
PHMG (구조식 : $(C_7H_{15}N_3)_n \cdot xH_3O_4P$)	- (용도) 소독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살균제 (소독제 등)	- 살균, 멸균, 소독, 향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욕실 소독제 -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사용하는 제품	- 파리·모기 살충제 - 해충 유인제, 기피제 - 살서제(취약)
보존제 (방부제 등)	-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여 제품의 기능을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목재용 방부제, 화학제품 보존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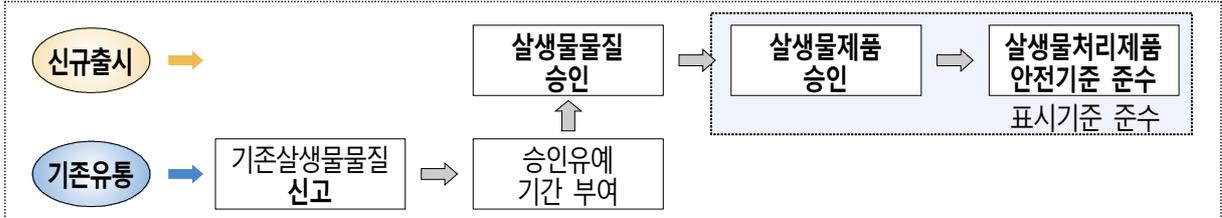
제품	기능
- 향균 기능성 의류 - 향균 처리 필터 - 방부처리 된 목재 - 보존제가 들어간 화학제품	- 제품의 향균기능 강화, 보존,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살생물제품(보존제)를 첨가한 제품

붙임 2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

<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체계 >



- (신규출시) 살생물물질·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시장 출시 가능
- 살생물처리제품(항균필터 등)은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
- (기존유통) 정부에 신고('19.6.30.까지)하면 승인 준비기간* 부여
* △살균제·살충제 등(~'22년) △목재보존제 등(~'24) △가죽보존제 등(~'27) △방오제 등(~'29)

붙임 3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 (목적)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업체의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 추가신고 운영
* 승인유예 받지 않은 업체가 '19.12.31. 이후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6조)
- (개요) '19.6.30.까지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지 못한 업체 또는 신고하였으나 물질 및 제품유형을 누락한 기업을 위해 추가신고 운영
 - (운영기간) 2019년 11월 11일 ~ 12월 11일(30일간)
 - (신고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신고방법)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온라인 제출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신고사항)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되는 제품유형, 제조·수입량 등
 - (추가신고 혜택) 신고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부여
 - (문의·상담)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내선 3번)

1. 6월 30일까지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몇 종이며, 그중 이번 고시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물질이 있는지요?

- 6월 30일까지 신고된 물질은 약 830여 종이며,
- 그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 용도가 아닌 물질(120여 종)과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유통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30여 종), 구리복합체, 호마노석과 같이 불명확한 물질(10여 종)은 제외됨
- 법률에서 승인유예대상을 기존살생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살생물물질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말함(법 제18조제1항)

2. 이번 고시 예정된 물질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해 나아갈 계획이 있는지?

- 국내·외 규제 현황 등을 통해 유해성·위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반영하였음
- 추가 유해성·위해성 우려 물질이 확인되면 실태조사하여 필요 시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유예기간 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으로 관리할 예정임

3. 12월 31일 확정 고시 이후 업체는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업체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 동일한 물질을 신고한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일부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에 가입하여 자료 생산을 준비하여야 함
 - 환경부는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가 원활히 구성·운영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 지원할 예정임